

■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[별표 3] <개정 2021. 6. 30.>

예비검사수수료(제2조제1항제3호관련)

1. 선체와 관련된 선박용물건

가. 금속재료의 검사

(단위 : 원)

항 목(톤)	수수료	비 고
보 통 압 연 강 재	1,290	1. 검사원 1인이 4시간이내의 시간동안 검사할 경우를 1회 검사로 하고, 1회 검사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검사횟수마다 당해 수수료의 25퍼센트씩 가산한다. 2. 설계도면과 그 부속서류를 심사하는 경우의 도면심사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3. 동일공장에서 같은 규격을 동시에 대량 검사할 경우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. ○ 1개이상~ 10개이하 100퍼센트 ○ 11개이상~ 30개이하 90퍼센트 ○ 31개이상~ 60개이하 80퍼센트 ○ 61개이상~ 100개이하 70퍼센트 ○ 101개이상 60퍼센트 4. 금속재료의 항목별 수수료는 금속재료의 재료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. 5. 보통주강단조품 및 주철품을 기계가공을 하여 출고하는 경우 가. 중간가공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금속재료의 수수료에 10퍼센트를 가산한다. 나. 다듬질가공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금속재료의 수수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.
보 일 러 용 압 연 강 재	2,160	
초고장력강재및저온용강재	2,160	
보 통 강 재	3,610	
보 일 러 관 및 합 금 강 관	5,630	
보 통 주 강 단 조 품	4,760	
주 철 품	2,890	
합 금 주 강 단 조 품	8,800	
비 철 금 속 압 연 재	11,420	
비 철 금 속 주 단 조 품	11,420	

나. 특수재질선박의 선체

(단위 : 원)

톤 급 별(톤)	수 수 료	비 고
5미만	15,180	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5이상	30,380	

다. 선미골재

(단위 : 원)

선미보스의 두께(mm)	수 수 료	비 고
20미만	8,230	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
20이상~ 30미만	10,410	
30이상~ 40미만	12,580	
40이상~ 50미만	14,890	
50이상~ 60미만	17,200	
60이상~ 80미만	19,960	
80이상~ 100미만	22,580	
100이상	22,580에 매 10mm 초과시마다 1,440을 가산한다.	

라. 타·타두재·타심재

(단위 : 원)

타의 면적(m ²)	수 수 료	비 고
5미만	21,710	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5이상~ 10미만	30,700	
10이상~ 25미만	48,550	
25이상~ 50미만	68,660	
50이상~ 75미만	84,090	
75이상~ 100미만	97,100	
100이상~ 150미만	118,920	
150이상	118,920에 매 50m ² 초과시마다 12,400 을 가산한다.	

마. 창구덮개

(단위 : 원)

구 분	수 수 료	비 고
10m ² 미만	1,500	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
10m ² 이상	2,000	

2. 기관에 관련된 선박용물건

가. 내연기관(선내외기 포함)

(단위 : 원)

출력 : KW(마력 : PS)				수 수 료
	22	(30)미만		26,320
22	(30)이상~	37	(50)미만	37,430
37	(50)이상~	55	(75)미만	54,240
55	(75)이상~	74	(100)미만	65,310
74	(100)이상~	110	(150)미만	93,050
110	(150)이상~	148	(200)미만	120,790
148	(200)이상~	184	(250)미만	137,370
184	(250)이상~	368	(500)미만	203,720
368	(500)이상~	735	(1,000)미만	349,770
735	(1,000)이상~	1,839	(2,500)미만	606,160
1,839	(2,500)이상~	3,678	(5,000)미만	916,330
3,678	(5,000)이상~	7,355	(10,000)미만	1,248,590
7,355	(10,000)이상~	14,710	(20,000)미만	1,340,830
14,710	(20,000)이상~	22,065	(30,000)미만	1,439,890
22,065	(30,000)이상~	36,775	(50,000)미만	1,546,270
36,775	(50,000)이상			1,546,270에 매 출력 735KW(1,000PS)초과시마다 265,820을 가산한다.
비 고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 2. 내연기관인 경우에는 제동출력(BHP)을 기준으로 하고, 터빈기관인 경우에는 도시출력(IHP) 또는 축출력(SHP)을 기준으로 한다.			

나. 선외기

(단위 : 원)

출력 : KW(마력 : PS)	수수료	비 고
4 (5) 미만	11,76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
4 (5)이상~ 8 (10) 미만	15,800	
8 (10)이상~ 12 (15) 미만	18,000	
12 (15)이상~ 19 (25) 미만	21,600	
19 (25)이상~ 37 (50) 미만	34,800	
37 (50)이상~ 74(100) 미만	63,000	
74(100)이상~ 184(250)미만	148,200	
184(250)이상	203,700	

다. 내연기관용 부품(실린더헤드·실린더블록·베드·배기밸브·실린더라이너·연접
 봉·크랭크축·피스톤·피스톤봉·크로스헤드·크로스헤드핀)

(단위 : 원)

실린더 지름(mm)	수 수 료	비 고
150미만	2,16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150이상~ 200미만	3,760	
200이상~ 500미만	12,860	
500이상	17,070	

라. 보일러

(단위 : 원)

최대연속정격증발량(t/h)	수 수 료	비 고
1미만	86,07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1이상~ 5미만	195,440	
5이상~ 10미만	255,910	
10이상~ 20미만	328,400	
20이상~ 50미만	545,830	
50이상~ 100미만	908,370	
100이상	908,370에 매 1t/h 초과시마다 3,890을 가산한다.	

마. 배기터빈과급기

(단위 : 원)

정격토출공기량(m³/min)	수 수 료	비 고
25미만	17,07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25이상~ 50미만	34,430	
50이상~ 100미만	54,390	
100이상~ 250미만	86,070	
250이상~ 500미만	137,860	
500이상~ 750미만	172,440	
750이상~ 1,000미만	206,870	
1,000이상	206,870에 매 250 m³/min초과시 마다 17,070을 가 산한다.	

바. 압력용기

(단위 : 원)

용기의 내용적(m^3)	수 수 료			비 고
	제1종	제2종	제3종	
0.05미만	8,230	4,470	2,160	제1호 가목의 비 고란의 제1호 내 지 제3호와 같다.
0.05이상~ 0.1미만	17,070	8,230	4,470	
0.1이상~ 0.5미만	25,600	12,860	6,790	
0.5이상~ 1.0미만	34,430	17,070	8,230	
1.0이상~ 2.5미만	42,530	21,700	10,700	
2.5이상~ 5.0미만	51,640	25,600	12,860	
5.0이상~ 10.0미만	60,030	30,510	15,180	
10.0이상~ 25.0미만	77,250	38,900	19,380	
25.0이상~ 50.0미만	103,430	51,640	25,600	
50.0이상~ 75.0미만	129,040	65,120	32,400	
75.0이상~ 100.0미만	155,080	77,250	38,900	
100.0이상	155,080에 매 50 m^3 초 과 시 마 다 25,600을 가산한다.	77,250에 매 50 m^3 초 과 시 마 다 12,860을 가산한다.	38,900에 매 50 m^3 초 과 시 마 다 6,790을 가산한다.	

사. 열교환기

(단위 : 원)

냉각 또는 가열면적(m^2)	수 수 료	비 고
5미만	8,23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5이상 ~ 10미만	13,300	
10이상 ~ 25미만	17,070	
25이상 ~ 50미만	22,850	
50이상 ~ 100미만	25,600	
100이상~ 250미만	34,430	
250이상~ 500미만	49,760	
500이상~ 1,000미만	63,070	
1,000이상	63,070에 매 50 m^2 초과시마다 14,020 을 가산한다.	

아. 공기압축기·냉매압축기

(단위 : 원)

원동기의 정격출력(KW)	수 수 료	비 고
5미만	5,600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 2. 공기압축기등을 구동하는 원동기는 당해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5이상~ 10미만	10,350	
10이상~ 25미만	16,070	
25이상~ 50미만	26,940	
50이상~ 75미만	30,270	
75이상~ 100미만	42,600	
100이상~ 150미만	53,020	
150이상~ 200미만	58,690	
200이상~ 300미만	69,640	
300이상~ 500미만	74,380	
500이상	74,380에 매 100KW(135PS) 초과시마다 5,600을 가산한다.	

자. 중간축·역전기축·스러스트축·프로펠러축·기타 동력전달축 및 선미관

(단위 : 원)

지 림(mm)	수수료	비 고
100미만	9,540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 2. 선미관은 프로펠러축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. 3. 가변피치용축 또는 중공가공축을 검사할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.
100이상~ 200미만	16,340	
200이상~ 300미만	17,070	
300이상~ 400미만	22,850	
400이상~ 600미만	28,640	
600이상	34,430	

차. 감속장치등(중속감속 및 역전장치·중속 또는 감속장치·증기터어빈용감속장치·역전장치)

(단위 : 원)

내연기관의 출력 : KW(마력: PS)	수 수 료
22 (30)미만	5,270
22 (30)이상~ 37 (50)미만	7,490
37 (50)이상~ 55 (75)미만	10,850
55 (75)이상~ 74 (100)미만	13,070
74(100)이상~ 110 (150)미만	18,610

110(150)이상~	148	(200)미만	24,160
148(200)이상~	184	(250)미만	27,480
184(250)이상~	368	(500)미만	40,750
368(500)이상~	735	(1,000)미만	69,960
735(1,000)이상~	1,839	(2,500)미만	121,240
1,839(2,500)이상~	3,678	(5,000)미만	183,270
3,678(5,000)이상~	7,355	(10,000)미만	249,720
7,355(10,000)이상~	14,710	(20,000)미만	268,170
14,710(20,000)이상~	22,065	(30,000)미만	287,980
22,065(30,000)이상~	36,775	(50,000)미만	309,260
36,775(50,000)이상	309,260에 매 출력 735KW(1,000PS)초과시마다 53,170을 가산한다.		
비 고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		

카. 유체커플링·탄성커플링·클러치

(단위 : 원)

정격토크(kg-m)	수수료	비 고
200미만	8,17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200이상~ 300미만	8,540	
300이상~ 400미만	11,430	
400이상~ 600미만	14,320	
600이상~ 1,000미만	22,690	
1,000이상~ 3,000미만	30,250	
3,000이상~ 5,000미만	42,360	
5,000이상~ 10,000미만	48,430	
10,000이상	48,430에 매 5,000kg-m 초과시마다 3,010을 가산한다.	

타. 프로펠러

(단위 : 원)

지 림 (mm)	수 수 료	비 고
400미만	3,180	1. 제 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400이상~ 600미만	6,360	
600이상~ 800미만	12,860	2. 조립식은 당해 수수료의 20퍼센 트를, 가변피치식은 당해 수수료의
800이상~ 1,000미만	25,750	

1,000이상~ 1,500미만	48,160	50퍼센트를 가산한다.
1,500이상	48,160에 매 100mm초과시마다 6,360을 가산한다.	3. 날개 1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파. 원격제어장치

(단위 : 원)

내연기관의 출력 : KW(마력 : PS)				수 수 료
	22	(30)미만		26,320
22	(30)이상~	37	(50)미만	37,430
37	(50)이상~	55	(75)미만	54,240
55	(75)이상~	74	(100)미만	65,310
74	(100)이상~	110	(150)미만	93,050
110	(150)이상~	148	(200)미만	120,790
148	(200)이상~	184	(250)미만	137,370
184	(250)이상~	368	(500)미만	203,720
368	(500)이상~	735	(1,000)미만	349,770
735	(1,000)이상~	1,839	(2,500)미만	606,160
1,839	(2,500)이상~	3,678	(5,000)미만	916,330
3,678	(5,000)이상~	7,355	(10,000)미만	1,248,590
7,355	(10,000)이상~	14,710	(20,000)미만	1,340,830
14,710	(20,000)이상~	22,065	(30,000)미만	1,439,890
22,065	(30,000)이상~	36,775	(50,000)미만	1,546,270
36,775	(50,000)이상			1,546,270에 매 출력 735KW(1,000PS)초과시마다 265,820을 가산한다.
비 고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 2. 주기관 자동 및 원격제어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. 3. 주기관자동화장치에 대하여는 당해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특수측계장치에 대하여는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			

하. 관·밸브 및 콕류

(단위 : 원)

구 분		수 수 료				비 고
호칭압력(kgf/cm ²)		10미만	20미만	50미만	50이상	
호칭지름(A)						
10미만	200	600	930	1,540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 2. KS에서 정하는 것외의 밸브 및 콕에 대하여는 그 실제의 지름 및 최고사용압력을 기준으로 한다.	
10이상~ 50미만	410	800	1,680	2,570		
50이상~ 100미만	800	1,680	2,510	3,350		
100이상~ 200미만	1,680	2,510	4,260	5,140		
200이상	1,680에 매 200mm 초과시마다 1,290을 가산 한다.	2,510에 매 200mm 초과시마다 1,680을 가산 한다.	4,260에 매 200mm 초과시마다 2,120을 가산 한다.	5,140에 매 200mm 초과시마다 2,510을 가산 한다.		

거. 펌프

(단위 : 원)

정격토출용량(m ³ /h)	수 수 료	비 고
5미만	4,470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 2. 전 양정이 50m 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수수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.
5이상~ 10미만	8,230	
10이상~ 25미만	12,860	
25이상~ 50미만	17,070	
50이상~ 100미만	21,700	
100이상~ 250미만	30,510	
250이상~ 500미만	38,900	
500이상~ 1,000미만	49,760	
1,000이상~ 2,000미만	60,030	
2,000이상	60,030에 매 100m ³ 초과시마다 8,230을 가산한다.	

너. 유압펌프 및 모터

(단위 : 원)

Q×P/100 Q : 용량(L/min) P : 정격압력(kgf/cm ²)	수 수 료	비 고
20미만	14,92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20이상~ 50미만	18,970	
50이상~ 100미만	26,680	
100이상~ 250미만	34,020	
250이상~ 500미만	43,510	
500이상~ 1,000미만	60,210	
1,000이상~ 2,000미만	67,550	
2,000이상	67,550에 매 1,000 초과시마다 11,250 을 가산한다.	

3. 조타·계선 및 양묘의 설비에 관련된 선박용물건
가. 조타장치

(단위 : 원)

토크(t-m/조)	수 수 료		비 고
	유 압 식	비 유 압 식	
0.5미만	4,470	2,450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 2. 조타기를 구동하는 유압 펌프 및 모터, 기동기에 관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0.5이상~ 1미만	5,340	3,030	
1이상~ 2미만	6,360	3,470	
2이상~ 3미만	7,230	3,890	
3이상~ 5미만	8,230	4,470	
5이상~ 10미만	14,020	7,230	
10이상~ 15미만	19,810	10,120	
15이상~ 20미만	25,600	12,860	
20이상~ 30미만	29,360	14,750	
30이상~ 40미만	35,580	17,780	
40이상~ 50미만	45,410	22,560	
50이상	45,410에 매 10t 초과시마다 17,930을 가산 한다.	22,560에 매 10t 초과시마다 5,200을 가산한 다.	

나. 닻

(단위 : 원)

닻무게(kg)	수 수 료	비 고
100미만	8,23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100이상~ 300미만	10,410	
300이상~ 500미만	12,440	
500이상~ 1,000미만	15,620	
1,000이상	15,620에 매 100kg 초과시마다 1,730을 가산한다.	

다. 쇠사슬

(단위 : 원)

체인 지름(mm)	수 수 료	비 고
10미만	6,210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 2. 길이는 27.5m를 기준으로 한다. 3. 주강재 체인의 검사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.
10이상~ 15미만	7,950	
15이상~ 20미만	9,680	
20이상~ 30미만	11,710	
30이상~ 50미만	14,710	
50이상~ 70미만	16,630	
70이상~ 100미만	19,380	
100이상	19,380에 매 10mm 초과시마다 2,020을 가산한다.	

라. 로 프

(단위 : 원)

로프의 지름(mm)		수 수 료	비 고
와이어로프	20미만	2,740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 2. 1타래의 길이는 250m를 기준으로 한다.
	20이상~ 30미만	3,320	
	30이상~ 40미만	4,470	
	40이상~ 50미만	5,630	
	50이상~ 70미만	6,790	
	70이상	7,950	

마닐라로프	40미만	2,600
	40이상~ 70미만	3,320
	70이상	4,470
합성섬유로프	40미만	3,320
	40이상~ 70미만	4,470
	70이상	6,210

마. 계선기 및 양묘기

(단위 : 원)

정격하중(t)	수 수 료	비 고
1미만	4,470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 2. 계산기 또는 양묘기(닷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)를 구동하는 전동기 또는 유압펌프에 관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이상~ 2미만	5,340	
2이상~ 3미만	6,210	
3이상~ 5미만	8,230	
5이상~ 7미만	10,410	
7이상~ 10미만	15,910	
10이상	15,910에 매 25톤 초과시마다 7,520을 가산한다.	

4. 구명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

가. 구명기구

(단위 : 원)

구 분	수수료	비 고
구 명 정	34,430	제 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구 조 정	33,600	
구 명 뗏 목 지 원 정	22,140	
제1종팽창식구명뗏목	17,020	
제2종팽창식구명뗏목	11,420	
고 체 식 구 명 뗏 목	11,420	
구 명 부 기	1,300	
구 명 부 환	600	
구 명 동 의	600	
구 명 줄 발 사 기	6,790	
방 수 복	3,040	

나. 진수장치 및 탑승장치

(단위 : 원)

구 분	수수료	비 고
구 명 정 진 수 장 치	2,00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구 조 정 진 수 장 치	1,800	
구명뗏목지원정진수장치	1,620	
구 명 뗏 목 진 수 장 치	1,450	
보 트 대 밧	17,120	
탑 승 용 사 다 리	500	
강 하 식 탑 승 장 치	25,600	

다. 신호장치

(단위 : 원)

구 분	수수료	비 고
로 켓 낙 하 산 신 호	57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신 호 홍 염	570	
발 연 부 신 호	570	
자 기 발 연 신 호	570	
전지식자기점화등	570	
발염식자기점화등	570	
탐 조 등	8,230	
구 명 동 의 표 시 등	360	

라. 구명기구 부분품 및 의장품

(단위 : 원)

구 분	수수료	비 고
캐 노 피 등	36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수 밀 전 기 등	360	
역 반 사 재	840	
구 난 식 량	570	
구 난 식 수	80	
해 수 탈 염 장 치	480	
수 압 이 탈 장 치	770	
위 크 링 크	80	
레 이 더 반 사 기	840	

5. 소방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

가. 소화기

(단위 : 원)

구 분	수수료	비 고
자동 확산형 소화기	40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고정식 소화기	2,000	
이동식 소화기	1,300	
휴대식 소화기	1,000	
간이식 소화기	700	
소화제	500	

나. 소화기구

(단위 : 원)

구 분	수수료	비 고
소방원장구(방호복)	5,60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호흡구	4,470	
방연헬멧	700	
안전등	1,000	
물분무방사기	360	
국제육상시설연결구	480	
가연성가스검정기	1,240	
방화문	14,440	

다. 소화장치 부분품

(단위 : 원)

구 분	수수료	비 고
소화호스	88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노즐	170	
스플링클러헤드	480	

라. 화재탐지장치 및 부분품

(단위 : 원)

구 분	수수료	비 고
화재탐지장치	57,42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탐지기	3,250	
제어반	1,160	
표시반	2,270	

수동화재발신기	2,000	
화재경보장치	1,300	

6. 거주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

(단위 : 원)

구 분	수 수 료	비 고
현 창	88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비 상 표 시 등	170	
탈 출 유 도 등	480	

7. 항해용구와 관련된 선박용물건

가. 선등 및 부품

(단위 : 원)

구 분		수 수 료	비 고
갑종선등	장 등	1,090	제 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	현 등	1,090	
	선 미 등	970	
	백 등	970	
	홍 등	1,090	
	섬 광 등	970	
을종선등	장 등	970	
	현 등	970	
	선 미 등	900	
	백 등	900	
	홍 등	970	
	섬 광 등	970	
기 타 의 선 등		970	
선 등 부 분 품		300	
전 구		300	

나. 항해용구

(단위 : 원)

구 분		수 수 료	비 고
기 적	제1종	16,54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	제2종	12,340	
	제3종	8,150	
	제4종	6,050	

호 종	800
동 라	740
자 기 컴 퍼 스	3,720
자 이 로 컴 퍼 스	22,830
음 향 측 심 기	11,420
선 속 거 리 계	26,460
회 두 각 속 도 계	27,930
도 선 사 용 사 다 리	970
엔 진 텔 레 그 라 프	9,100

8. 하역·기타 작업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

가. 크레인·원치

(단위 : 원)

안전사용하중(t)	수 수 료		비 고
	크레인	원 치	
1미만	9,100	4,470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1이상~ 5미만	16,630	8,230	
5이상~ 10미만	31,960	15,910	
10이상~ 25미만	43,530	21,700	2. 유압구동에 의한 크레인 또는 원치의 검사수수료는 당해 수수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.
25이상	43,530에 매 5t 초과시마다 3,470을 가산한다.	21,700에 매 5t 초과시마다 1,730을 가산한다.	

나. 블록류

(단위 : 원)

구 분	안전사용하중(t)	수 수 료	비 고
카고블록	20미만	4,47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	20이상	9,540	
체인블록	5미만	4,470	
	5이상	9,540	

9. 전기설비와 관련된 선박용물건

가. 발전기

(단위 : 원)

정격출력(kW,kVA)	수 수 료	비 고
5미만	4,47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

5이상~	10미만	8,230	제3호와 같다.
10이상~	25미만	12,860	
25이상~	50미만	17,070	
50이상~	75미만	19,380	
75이상~	100미만	21,700	
100이상~	250미만	25,600	
250이상~	500미만	34,430	
500이상		34,430에 매 50kw(kVA)초과 시마다 860을 가산한다.	

나. 전동기

(단위 : 원)

정격출력(kW)	수 수 료	비 고
5미만	4,470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 지 제3호와 같다. 2. 방폭형의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 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.
5이상~ 10미만	8,230	
10이상~ 25미만	12,860	
25이상~ 50미만	17,070	
50이상~ 75미만	20,250	
75이상~ 100미만	25,600	
100이상~ 250미만	34,430	
250이상~ 500미만	42,820	
500이상	42,820에 매 500 kW 초과시마다 7,660을 가산한다.	

다. 변압기

(단위 : 원)

정격용량(kVA)	수 수 료	비 고
5미만	4,47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5이상~ 10미만	6,790	
10이상~ 25미만	8,230	
25이상~ 50미만	11,420	
50이상~ 100미만	12,860	
100이상~ 250미만	16,110	
250이상~ 500미만	19,500	

500이상	19,500에 매 500 kVA 초과시마다 3,070을 가산한다.
-------	--

라. 배전반 및 급전반

(단위 : 원)

급전하는 발전기의 총 용 량 (kVA)	수 수 료	비 고
10미만	8,23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10이상~ 25미만	12,860	
25이상~ 50미만	17,070	
50이상~ 100미만	21,700	
100이상~ 250미만	30,510	
250이상~ 500미만	42,820	
500이상~ 1,000미만	56,270	
1,000이상~ 2,500미만	73,490	
2,500이상~ 5,000미만	86,070	
5,000이상	86,070에 매 2,500kVA 초과시 마다 12,860을 가 산한다.	

마. 제어기

(단위 : 원)

정격출력(kVA)	수 수 료	비 고
5미만	2,740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 2. 집합기동반은 집합기동반에 의해 제어되는 전동기의 합계출력을 정격출력으로 한다.
5이상~ 10미만	4,470	
10이상~ 25미만	6,790	
25이상~ 50미만	8,230	
50이상~ 75미만	10,700	
75이상~ 100미만	12,860	
100이상~ 250미만	17,070	
250이상~ 500미만	21,700	
500이상	21,700에 매 500 kVA 초과시마다 4,180을 가산한다.	

바. 기타 전기기기

(단위 : 원)

항목(면 또는 개당)	수 수 료	비 고
충 방 전 반	8,230	제1호 가목의 비고란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.
방 폭 형 기 기	4,470	
분 전 반	8,230	

사. 선박용전선

(단위 : 원)

구 분	단 위 (100m당)	수 수 료			비 고
		단 심	2 심	3 심	
동력용 또는 조명용(도체 단면적㎟)	10미만	800	1,300	1,470	1. 제1호 가목의 비고란 의 제1호 내지 제3호 와 같다. 2. 4심 이상의 무기절연 전선의 수수료는 통신 용전선의 수수료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	10이상~ 50미만	1,080	1,470	1,790	
	50이상~ 100미만	1,300	1,680	2,030	
	100이상	1,590	1,860	2,280	
통 신 용 (심 선 수)	10미만	2,120			
	10이상~ 20미만	2,700			
	20이상~ 30미만	3,400			
	30이상	4,100			
배 전 반 용	100m당	800			
제 어 기 기 용	100m당	410			
이 동 용	100m당	1,250			